

#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초빙 공고

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 갈  
기금운용 최고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.

## 1. 공모직위 (임기)

- 기금이사 (2년,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)

## 2. 주요 담당 업무

- 국민연금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

## 3. 자격요건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단위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으로서,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

-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
 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
  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그 밖에 기금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
- ①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
    - 한국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농협·수협은행 등
  - 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금융투자업자
  - ③ 연·기금운용 기관
  - ④ 외국계 자산운용 기관
    - 은행, 자산운용사, 증권사, 연·기금, 국제금융기구 등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<p>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— [ 국가공무원법 제33조 (결격사유) ] —</p> <p>1, 2. 피성년후견인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</p> <p>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</p> <p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</p> <p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p> <p>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</p> <p>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</p> <p>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</p> <p>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</p> <p>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</p> <p>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</p> <p>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</p> <p>7, 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,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
---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

#### 4. 제출서류

- 공통 :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경력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※ [첨부] 지원자 제출서류 '양식' 참조
  - ※ 경력증명서가 없거나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은 경력사항은 인정하지 않음
  - ※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, 대학의 학력증명서 포함
- 추가 :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,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## 5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6. 11.(목) ~ 6. 25.(목) 18:00
- 접수처 : (우)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(만성동)  
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추천위원회(7층, 인사혁신실)
- 접수방법 : 이메일(npshr@nps.or.kr), 등기우편, 방문 접수(대리 접수 가능) 중 택일  
※ 모든 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, 방문접수는 토요일·공휴일 제외  
※ 이메일로 접수 시, 추후 안내에 따라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## 6. 심사방법

- 서류심사
  -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경력, 직무 적합성 및 경영능력 등 심사
- 면접심사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)
  - 기금운용 전문성, 리더십·경영능력, 인성 등 심사  
※ 면접 일시 및 장소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- 인사검증(임용후보자)
  - 임용후보자의 임용구비서류, 신원조사, 결격사유 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,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 취소  
※ 인사검증 관련 필요 구비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

## 7. 기타사항

- 서류심사 시 지원자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,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(원본)는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, 구비서류(경력 입증자료)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평판조회를 실시하며, 평판조회 미참여 시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는 주식 등에 대한 개인투자가 금지되며, 매년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합니다.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해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,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(npshr@nps.or.kr) 또는 ☎ 063-713-5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